

청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규정

제 정 2022. 1. 20. 제1598호

개 정 2022. 12. 13. 제162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6조 및 「청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진흥 규정」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의 “연구년”이란 본교 전임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구분) 연구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장기 연구년: 1년
2. 단기 연구년: 6개월

제4조(신청자격 등) ①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교 임용 이후 5년 이상 또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5년 이상 재직하고, 연구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구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본교에 재직할 수 있는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년 지원신청서를 연구년 개시 직전 학년도 5월 31일까지 소속 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 임용 전에 본교 전임 교원이었던 총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선발 인원) ① 총장은 본교 전임 교원 현원의 100분의 12 이내에서 매년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발 인원을 결정·공고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선발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3항에 따라 연구년을 신청한 자
2. 공인된 외부학술지원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국외파견연구 지원을 받는 자
3. 총장이 학술연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연구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6조(처우) ①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

② 연구년 교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학술지원기관에 의해 지원을 받아 연구년에 선정된 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동안에도 본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가지며, 인사와 급여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

제7조(선정) ①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년 지원을 받는 교원(이하 “연구년 교원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되 신청자가 제5조에 따른 공고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 제1호의 경우 본교 재직기간 시작일은 직전 연구년 종료 또는 신규 임용 이후 도래하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 중 가까운 날을 시작일로 한다. 다만,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연구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일을 재직기간 시작일에 포함한다.

1. 본교 재직기간이 긴 자
2. 연구년 신청기간이 짧은 자
3. 최근 3년간 본교 「교수업적평가 규정」 [별표5] 연구영역 원점수 평균이 높은 자
4. 최근 3년간 강의 책임시간을 충족한 자

② 총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년 교원을 선정할 때에는 각 심화과정별 전임 교원 현원의 50%를 초과하는 교원이 동일 기간에 연구년을 갖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심화과정별 전임교원 현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4명으로 본다.

제8조(계획 변경) ① 연구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연구개시 2개월 이전까지**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2.12.13.>

1. 연구년 대상 학년도 범위 내에서 연구년 시작일 변경
2. 장기(1년) 연구년을 단기(6개월) 연구년으로 변경
3. 연구 수행기관 변경

② 연구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결과물 발표·게재·출간 과정에서 연구과제명과 결과물 제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서를 결과물과 함께 제출한다.

1. 연구주제 변경
2. 연구내용 변경

제9조(국외연구년 일시귀국·조기귀국·지연출국) ① 국외연구년 교원의 일시귀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시귀국 기간을 통산하여 30일을 최대 인정 일수로 한다.

1. 본인,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(형제·자매 포함)의 질병, 사망 및 혼사
2.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학술회의 참석
3.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

② 조기귀국 및 지연출국의 인정 가능 일수는 각각 14일 이내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, 천재지변, 전시 또는

사변 및 감염병 등의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할 수 있다.

④ 일시귀국·조기귀국·지연출국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국외연구년 교원의 일시귀국·조기귀국·지연출국이 총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연구비를 회수한다.

1. 일시귀국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
2. 조기귀국 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
3. 지연출국 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
4. 그 밖에 지원경비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

⑥ 국외연구년 교원의 일시귀국·조기귀국·지연출국이 제9조제3항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경우 연구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간변경) ① 연구년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장기 연구년 교원은 2개월, 단기 연구년 교원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이 경우 잔여 연구년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.

③ 전염병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년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관계 법령 또는 연구년 교원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은 연구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이 경우 잔여 연구년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.

제11조(결과물 제출)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진행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간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체능계열은 발표, 전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제출 기한은 학내 다른 연구 과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경우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.

제12조(연기 및 포기) ①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이 연구년 개시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연구년 선정을 포기할 경우 선정된 해의 10월 31일까지 연구년 연기(포기)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년 개시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경우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연구년 연기신청은 불가하다.

③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이 선정된 해의 11월 1일 이후 연구년 연구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공고되는 최초 연구년 지원사업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연구년 개시 학년도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연

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산정한다.

④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이 연기 또는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발한다.

제13조(의무)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행 중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대학·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내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받을 수 없다.

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연구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에 의해 연구년을 부여받은 전임 총장의 경우,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일 때에는 잔여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.

③ 연구년 기간 중 연구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외연구년 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총장에게 보고
2. 체재지 도착 20일 이내 도착보고서 제출
3. 귀국시 귀국 20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

제14조(연구비 반환 등) ① 연구년 기간 종료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결과물 제출 또는 제13조제2항의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청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진흥 규정」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

② 제13조제3항과 제4항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구년 지원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제15조(세칙) 연구년 교원 사무처리 기준은 「전임교원 연구년 관리지침」에 따른다

제1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제1598호, 2022. 1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624호, 2022. 12. 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